

서면브리핑

2014년 11월 12일(수) 배포 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가. 이용자정책 총괄과 김용일 과장(1510)

나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(1520)

다. 방송광고정책과 반상권 과장(1270)

[보고 안건]

가.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열 과장(1520)

나. 방송광고정책과 반상권 과장(1270)

2014년 제53차 위원회 결과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,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

[의결안건]

가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
(첨부 1참조)
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'14.11.29. 시행)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▲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 ▲개인정보 암호화 대상 개선 ▲법정 손해배상 청구 기간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 개정안을 의결함

나.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 위반사업자 행정처분에 관한 건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개인정보관리 취약 분야인 온라인 게임·쇼핑몰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한 1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(총 5,500만원)를 부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함

※ (주요 위반행위) 수집된 개인정보를 취급하면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등

다. 협찬고지 법규 위반 방송사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건

- 한국방송공사¹⁾, (주)문화방송²⁾, 한국교육방송공사³⁾, (주)매일방송⁴⁾이 「방송법」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, 「협찬고지에 관한 규칙」 제7조 제2호에 따른 협찬고지의 금지 대상⁵⁾을 위반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하여, 과태료 총 1억 1,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

- 1) 한국방송공사 : ‘청진기 - 쌍둥이 자매의 승마도전기’, ‘사랑의 가족 - 마음돌보기 장애인 재활승마를 아십니까’, ‘KBS 파노라마 - 플라톤의 노래 늙은 경주마의 기억’, ‘말에게 말을 걸다’ 총 4개 프로그램
- 2) (주)문화방송 : ‘바람의 말(1부·2부)’ 총 2개 프로그램
- 3) 한국교육방송공사 : ‘직업의 세계 일인자 - 경마1000승의 신화 조교사 신우철’, ‘낭만한국 - 제주가 들려주는 말의 기억을 찾아서’, ‘직업의 세계 일인자 - 말과 소통하는 장제사 신상경’ 총 3개 프로그램
- 4) (주)매일방송 : ‘말 달리다(1부)’
- 5) ‘한국마사회’는 사행산업사업자로, 방송법 제74조, 동법 시행령 제60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성캠페인 이외에 협찬고지를 할 수 없음

< 방송사별 과태료 금액 >

(단위 : 만원)

방송사업자	(주)문화방송	한국방송공사	한국교육방송공사	(주)매일방송
과태료 금액	2,600 (2회)	5,400 (4회)	2,700 (3회)	900 (1회)

[보고안건]

가. 「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」 제정안에 관한 사항(별도 보도자료 참조)

-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·보관하거나 이용자 동의를 강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▲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기준, ▲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기준, ▲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기준 등을 규정한 ‘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’ 제정안을 보고함

나. 「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(첨부 2참조)

-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 근거하여 「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‘방송광고 매출배분(전파료) 분쟁조정 절차’를 마련하는 「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안을 보고함

<첨부1>

□ 주요 개정내용

-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 폐지(안 제14조제3항 삭제)
 - 실효성이 미흡한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
- 개인정보 누출 신고 기관 추가 등(안 제14조제1항 및 제5항 신설)
 - 개인정보의 누출 등 신고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추가,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은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하도록 함
-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(안 제15조제4항 개정)
 -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고,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·변경이 용이하도록 암호화 대상을 고시로 위임함
- 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(안 제16조제1항 개정)
 -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조정
-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(안 제17조의2 신설)
 -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기간을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함
- 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 삭제(안 제29조 및 제30조 삭제)
 - 본인확인제 위헌결정('12.8.23, 헌법재판소)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해당 시행령 조문 삭제
-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(안 제61조제1항 신설)
 -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바, 동 기간을 수신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'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'로 정함

- 별도의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매체 규정(안 제61조제2항 신설)
 - 야간시간의 광고에 의한 수신자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매체로 규정
- 광고 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(안 제61조제3항 및 [별표 6])
 - 광고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대상 매체가 “전자적 전송매체”로 일원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매체 구분(“전화”)을 삭제하고
 - 전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우편, 모사전송, 그 외 전자적 전송매체로 구분하여 명시사항과 방법을 간명하게 규정하고
 - 광고 표기의무 위치를 ‘광고가 시작되는 부분’으로 통일하는 한편, ‘성인광고’ 명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표기의무 사항을 개선
- 수신동의 등 처리결과의 통지 규정(안 제62조의2 신설)
 - 전송자는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, 수신동의 등의 사실과 의사표시일자,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통지하도록 함
- 정기적인 수신동의 유지 의사 확인 규정(안 제62조의3 신설)
 - 수신동의 유지 의사는 2년 주기로 확인하되, 전송자의 명칭, 수신동의 일자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,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함
-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([별표 8] 및 [별표 9] 개정)
 -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상향 조정(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1%→3%) 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조정함

구 분	현행	개정안
매우 증대한 위반행위	0.9%	2.7%
증대한 위반행위	0.7%	2.1%
일반 위반행위	0.5%	1.5%

-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(정당한 사유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누출 등에 관한 통지·신고 등)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하고,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화함

<첨부2>

□ 「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 개정내용

○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절차 신설(개정안 제13조)

-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
- 분쟁 당사자간 성실한 합의 노력을 유도한다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 금지
-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와 피신청사업자에게 합의 권고 가능
- 방송통신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에 회부
-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는 방통위로부터 조정 회부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
-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, 이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 불성립 통지

○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업자 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조항 삭제 (고시 제9조)